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5. 11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노동 현안에 대한 전문적·세부적 논의를 위해 운영 중인 노사민정협의회
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실무
협의회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및 정비(안 제11조, 제12조, 제15조)

나.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정비(안 제14조)

다.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5조, 제9조, 제10조, 제12조~제1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담당과장”을 “담당 과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공개채용 한다”를 “공개채용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사전방문”을 “사전 방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그밖”을 “그 밖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시”를 각각 “구미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시가”를 “구미시가”로 한다.

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분과위원회) ① 실무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, 의견 조정, 보조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실무협회 위원으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관계 전문가를

위촉할 수 있다.

④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11조)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협의회, 실무협의회,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제13조(중전의 제12조)제1항 중 “관계기관”을 “관계 기관”으로, “관계전문가 또는 노사대표”를 “관계 전문가 또는 노사 대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”을 “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(중전의 제13조) 본문 중 “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”를 “협의회,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”로, “관계전문가”를 “관계 전문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구미시 소속 공무원, 구미시의회 의원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5조(중전의 제14조) 중 “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”를 “협의회,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사업무 <u>담당과장</u>으로 한다.</p>	<p>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담당 과장</u>-----.</p>
<p>제9조(사무국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사무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(출자·출연기관 포함)에서 노사업무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노무업무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<u>공개채용</u>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9조(사무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개채용</u>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노사분규 예방 기업체 <u>사전 방문</u> 후 교육 및 대화</p> <p>4.·5. (생략)</p> <p>6. <u>그밖</u>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</p>	<p>제10조(실무협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사전 방문</u> -----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</u>----- -----</p>

② (생략)

③ 실무협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- 1.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
- 2.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
- 3. 4. (생략)

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.

- 1. (생략)
- 2. 회의주관은 사안에 따라 실무협회의 의결로 주관기관을 정하며, 첫 회의는 시가 주관한다.

3. (생략)

⑤ (생략)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- 1. 구미시 -----
- 2. 구미시 -----
- 3. 4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

----- 구미시가 -----.

3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분과위원회) ① 실무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

사항을 사전 검토, 의견 조정, 보조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실무협의

제11조(회의록) 협의회 및 실무협
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
여야 한다.

제12조(의견청취 등) ① 협의회
및 실무협의회는 제3조의 각 호
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
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
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
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
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노사대표
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
청취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
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
회, 세미나의 개최, 설문조사 및
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
할 수 있고, 관계전문가 또는 관
계기관,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
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등) 협의회 또는 실

회 위원으로 구성하되, 분과위
원회의 목적 및 기능 수행에 필
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
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④ 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
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2조(회의록) 협의회, 실무협의
회,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
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 등) ① -----

----- 관계 기
관-----
---- 관계 전문가 또는 노사 대
표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관계 전문가 또는 관
계 기관-----
-----.

제14조(수당 등) 협의회, 실무협의

관계법령

□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조(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14조(수당 등)
 - 노사민정협의회,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수당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(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)

3. 미첨부 사유

- 소요예산 : 11,800천원 (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)

4. 작성자

- 노동복지과 노사정책팀 김원진(☎480-6202)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이 호 정
	팀 장	이 중 호
	담 당 자	김 원 진 (480-6202)